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1052호 2014.10.27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---- 7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181호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----- 8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188호 인천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----- 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1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10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59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0. 2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경서로46번길 14-1외 2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10. 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10-24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경서동 758-1	경서로46번길 14-1	2009-08-28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경서동 731-15	경서로 63	2009-08-28	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	
3	인천 서구 경서동 731-14	경서로 65	2009-08-28	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	
4	인천 서구 경서동 848-3	청라커널로329번길 19-6	2011-06-29	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이 있음을 부각	
5	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A11-2	영곡로498번길 10	2014-10-15	영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,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경서동 853-7	청라루비로144번길 6-12	2011-02-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,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원창동 21-27, 21-14	봉수대로501번길 42-1	2009-07-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 서구 원창동 21-28, 21-30	봉수대로501번길 42	2009-07-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연희동 807-3	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12	2010-11-05	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 서구 경서동 843-18	청라한울로41번길 16-1	2011-02-14	청라한울로의 시작지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 서구 경서동 843-22	청라한울로41번길 14-1	2011-02-14	청라한울로의 시작지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2	인천 서구 가좌동 564-54	가정로8번길 18	2009-08-28	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3	인천 서구 불로동 781-5	검단로744번2길 3	2008-12-31	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14	인천 서구 불로동 781-7	검단로744번1길 1	2008-12-31	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 서구 오류동 1634-9	도담5로 85	2012-10-25	도담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6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10. 2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중봉대로376번길 19외 6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	열 략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4-10-24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원창동 382-70	중봉대로376번길 19	2014-10-15	건물 멸실	
2	인천 서구 원창동 382-61	중봉대로376번길 21-1	2014-10-15	건물 멸실	
3	인천 서구 석남동 507-22	웃우물로26번길 3-1	2014-10-13	건물 멸실	
4	인천 서구 원창동 382-69	중봉대로376번길 21	2014-10-15	건물 멸실	
5	인천 서구 오류동 485-6	단봉로216번안길 8-8	2014-10-24	건물말소	
6	인천 서구 오류동 484-9	단봉로216번안길 2-4	2014-10-24	건물말소	
7	인천 서구 오류동 485-6	단봉로216번안길 2-2	2014-10-24	건물말소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61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10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계획취지 : 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2. 위 치 : 서구 검암동 648-10번지 일원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 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 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변 경(안)		
	가구 번호	획 지		가구 번호	획 지	
		위치	면적(m ²)		위치	면적(m ²)
1	100	1	628.3	100	1	482.6
		2	336.8		2	482.5

연번	기 정					변 경 (안)				
	가구 번호	가구면적 (m ²)	획지		분할가능 획 지 수	가구 번호	가구면적 (m ²)	획지		분할가능 획 지 수
			위치	면적(m ²)				위치	면적(m ²)	
2	101	2,526.9	1	923.0	4	101	2,526.9	1	1,187.7	-
			2	707.9	-			2	707.9	-
			3-1	631.3	4			3-1	631.3	4
			3-2	264.7	-			-	-	-

- 건축물에 대한 용도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· 배치 · 형태 · 색채 · 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 계제 생략)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62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10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계획취지 : 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2. 위 치 : 서구 검암동 665-6, -7번지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
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●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	변 경					
	가구번호	가구면적(m ²)	획 지		분할가능 획지수	가구번호	가구면적(m ²)	획 지		분할가능 획지수	
			위치	면적(m ²)				위치	면적(m ²)		
1	100	3,743.7	1	628.3	2	100	3,743.7	1	628.3	2	
			2	336.8	-			2	336.8	-	
			3	378.2	-			3	378.2	-	
			4-1	350.4	-			4-1	350.4	-	
			4-2-1	329.6	-			4-2-1	344.6	-	
			4-2-2	334.6	-			4-2-2	319.6	-	
			5	234.7	-			5	234.7	-	
			6	189.9	-			6	189.9	-	
			7	346.5	-				7	346.5	-
			8	614.7	-				8	614.7	-

●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100	4-2-1, 4-2-2	획지면적변경	효율적 토지이용 및 건축배치를 위한 획지변경

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181호

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공고

우리구 불로동 일원의 【블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】이 완료됨에 따라 『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『지적업무처리규정』 제81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0. 1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명 : 블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
2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(종합건설본부)
3. 지적공부 확정내역

소재지	종전토지 지적공부			확정토지 지적공부		
	필지수	면적(m ²)	비고	필지수	면적(m ²)	비고
불로동	607	310,148m ²	지번 조서 참 조	358	310,521.8m ²	지번 조서 참 조

4. 시행일 : 2014. 10. 17.
5. 공고기간 : 2014. 10. 17. ~ 2014. 10. 31. (14일간)
6. 열람장소 :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
7. 문의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토지정보과 032-560-48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·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-147(2014.09.22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【시설명:연구시설, 사업명: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】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10. 2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
 - 명칭 :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180,000㎡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환경부 장관 윤성규
 -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7. 05. 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해당없음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8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196호

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0월 24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일부 개정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관련 조항 정비 및 서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-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추가
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
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
 -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
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3년에서 재 위탁근거 마련
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신설
- 서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의 보조 근거 마련
- 보조금의 반환명령 신설

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:가정복지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5721) 또는 Fax(560-2744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

제9조제4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(단, 2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구립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“(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)”을“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각각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“(보육정보센터 구성)”을“(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“(보육정보센터 기능)”을“(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육아지원”을 “부모교육 운영 및 육아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

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

8.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
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 제목 “(보육정보센터 지도·감독)”을 “(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비용의 보조)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.

1.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

2.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사업

3.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

4.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.

제24조(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2. 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9조(위탁계약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.</p>	<p>제9조(위탁계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경우에는 (단, 2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한다)</u> -----.</p>
<p>제15조(지원 및 비용부담)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<u>어린이집</u>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탁자는 <u>어린이집</u>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지원 및 비용부담) ① ----- <u>구립어린이집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구립어린이집</u>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<u>보육정보센터</u> 설치 및 운</p>	<p>제18조(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설치 및</p>

영)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9조(보육정보센터 구성)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과 보육전문교원 외에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.

②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18조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탁·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

운영) ① -----

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.

② -----
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.

②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.

언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, 보육전문요원 등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보육정보센터 기능) 보육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
- 7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설>

<신설>

제21조(보육정보센터 지도·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2조(비용)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

-----.

제20조(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)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부모교육 운영 및 육아지원-
- 7.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

8.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
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·감독) -----
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.

제22조(비용)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금 및 지방비로 한다.

<신 설>

제23조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제23조(비용의 보조) ① 구청장은
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
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
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
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
할 수 있다.

1.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
원 사업
2.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사업
3.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
훈련 비용
4.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집
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
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
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
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
다.

제25조 (현행 제23조와 같음)

제24조(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
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
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
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.

- | | |
|--|--|
|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<u>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
또는 취소된 경우</u>2. <u>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
금을 사용한 경우</u>3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
우</u> |
|--|--|